

충청북도 도세 징수조례안

검토보고서



행정문화위원회

수석전문위원 김창호

충청북도 도세 징수조례안 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
2.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- 제출일자 : 2017년 4월 11일
- 회부일자 : 2017년 4월 14일

3. 제정이유

- 「지방세기본법」에서 지방세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분야가 「지방세징수법」으로 분리·제정(법률 14474호, 2016.12.27. 공포, 2017.3.28. 시행)됨에 따라, 「충청북도 도세 기본조례」에 규정하고 있던 도세의 징수 및 체납처분 관련 규정을 분리·이관하여 이 조례를 새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임.

4. 주요내용

- 고액·상습체납자 명단공개 규정(안 제2조),
- 징수교부금 교부시기 매분기 → 매월로 변경(안 제3조),
- 체납처분 유예 대상인 성실납부자 규정(안 제4조)

5. 검토의견

- 이 제정조례안은 국민들이 지방세의 징수규정을 쉽게 접근하게 하기 위해 「지방세기본법」에서 지방세의 징수규정을 「지방세징수법」으로 분리·제정한 것을 반영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의 취지에 맞는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됨.

붙임: 충청북도 도세 징수조례안. 끝.